



4-2 결혼할 때, 이혼할 때

(C 결혼 · 이혼 참조)

당사자 둘 중 하나의 주소가 있는 시구청촌의 관청에서 「혼인신고」나 「이혼신고」를 합니다.

당사자 둘 중 하나가 또는 둘 다 외국 국적의 경우 지방입국관리국과 본국의 대사관 · 영사관에서도 수속을 해야 합니다.

4-3 아이가 태어났을 때

(B 체류자격 2-8 체류자격의 취득, H출산 · 육아 2 출생신고와 국적의 취득 참조)

태어난 시구청촌 또는 신고인(보호자 등)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관청에 「출생신고서」를 냅니다.

부모의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외국 국적의 경우 지방 입국관리국과 본국의 대사관 · 영사관에서도 수속을 해야 합니다.

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생후 60 일까지 「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」로서 주민표가 작성됩니다.

중장기체류자의 아이가 행후 61 일이상 일본에서 체재할 때는 생후 30 일 이내에 가까운 입국관리국에 체류자격의 취득신청을 합니다.

출생증명서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.

출생신고 후에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할 때는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 체류자격 취득 허가를 받은 후에 다시 시구청촌에 주거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4-4 사망했을 때

(D 기타 수속 4 사망신고 참조)

사망지의 시구청촌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(보호자 등)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의 관청에 「사망신고서」를 냅니다. 사망한 사람의 체류카드를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 반납해야 하고, 본국의 대사관 · 영사관에서도 수속을 해야 합니다.